

【붙임-1】 「서울신용보증재단 임직원 행동강령」 新·舊조문대비표

新 · 舊 條 文 對 比 表

현 행	개 정 (案)
<p>임직원 행동강령</p> <p>제1장 총칙</p> <p>제1조 ~ 제4조 (기재생략)</p> <p>제2장 임직원의 기본자세</p> <p>제5조 ~ 제8조 (기재생략)</p> <p>제3장 공정한 직무수행</p> <p>제9조 (기재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설)</p> <p>제10조 ~ 제15조 (기재생략)</p> <p>제4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</p> <p>제16조 ~ 제17조 (기재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신설)</p>	<p>임직원 행동강령</p> <p>제1장 총칙</p> <p>제1조 ~ 제4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장 임직원의 기본자세</p> <p>제5조 ~ 제8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장 공정한 직무수행</p> <p>제9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의2 【퇴직자 관련 공정한 직무수행】</p> <p>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재단 퇴직자 (이하 '퇴직자'라 한다)에게 직무상 어떠한 특혜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② 임직원은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당한 수의계약, 대가 과다지급 등 계약상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③ 임직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이 행동강령 및 재단 징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.</p> <p>제10조 ~ 제15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</p> <p>제16조 ~ 제17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의2 【퇴직 후 취업제한】</p> <p>① 임직원은 재단 퇴직 후 취업시 「공직자윤리법」 등 관련법령과 이 행동강령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임직원은 퇴직 후 재단으로부터 특혜를 받으려는 등의 부당한 목적으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재단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 내지 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에 취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

제18조 ~ 제24조 (기재생략)

제5장 회계 및 정보관리 등의 투명성

제25조 ~ 제28조 (기재생략)

제6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

제29조 ~ 제33조의 2 (기재생략)

제7장 위반 시의 조치 등

제34조 ~ 제38조 (기재생략)

제8장 보칙

제39조 ~ 제43조 (기재생략)

부 칙 (제정) ~ (11)

(기재생략)

제18조 ~ 제24조 (현행과 같음)

제5장 회계 및 정보관리 등의 투명성

제25조 ~ 제28조 (현행과 같음)

제6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

제29조 ~ 제33조의 2 (현행과 같음)

제7장 위반 시의 조치 등

제34조 ~ 제38조 (현행과 같음)

제8장 보칙

제39조 ~ 제43조 (현행과 같음)

부 칙 (제정) ~ (11)

(현행과 같음)

부 칙 (12)

이 강령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